

등록번호	주택과-3709
등록일자	2015.2.4.
결재일자	2015.2.4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주택행정팀장	주택과장	환경도시국장		
우재환	조문익	송광덕	02/04 오제성		
협 조					

2015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계획



서대문구
주택과

2015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계획

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보수·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I 지원근거

- 주택법 제43조제9항
 - 『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가능』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제1항
 - 『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』

II 사업개요

- 공동주택 현황 : 총 115개단지 514개동 34,051세대
- 추진기간 : 2015. 2월 ~ 12월
- 지원기준 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88개단지 공동주택 [붙임 1]
 - 지원대상 : 66개단지(최근 5년에 1회이내 지원단지)

최근 5년이내 지원현황 (2010 ~ 2014년)	계	의무관리대상	임의단지대상
	66	23	43
미 지원	34	6	28
1회 지원	32	17	15

- 제외대상 : 22단지(최근 5년에 2회지원 또는 교부후 미집행 포함)
 - 의무관리(17단지) : 연희대우, 연희성원, 홍제3차청구, 남가좌삼성, 북가좌현대, 인왕산현대, 홍제원현대, 남양, 독립문극동, 태영 으뜸, 홍제 현대그린, 홍은극동, 독립문삼호
 - 임의관리(5단지) : 홍은금송힐스빌, 중앙하이츠, 충정현대, 동진빌라, 동보빌라

III 추진계획

주요사업내용

-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
-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
- 경로당의 보수
-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
-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·개선
-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·개선
-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·개선
-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
-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
- 음식물류폐기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·개선
-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·개선

우선지원 검토대상

-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
-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·개선
- 에너지 효율화 사업(BRP) 중 공용시설물의 LED 교체사업 단지

지원금 지원기준

-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(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별표 1)에 따라 차등 지원
- 해당연도 지원예산액의 10%(11,400천원)를 초과할 수 없음

□ 소요예산 : 114,140천원(구비)

○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 지원금(민간경상보조금) : 114,000천원

○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(사무관리비) : 140천원

IV 세부추진계획

□ 지원금 신청 및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15. 2.10. ~ 3.10.(28일간)

○ 접수장소 : 서대문구청 주택과(☎330-1154)

○ 접수방법 : 관리주체가 구청내방 서류신청서 접수

○ 구비서류 : 공동주택 지원신청서,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, 사업계획서(현장사진, 도면,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),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등

□ 시설물 현장조사

○ 현장조사 : 2015. 3.11. ~ 3.20.(10일간)

○ 조사방법 : 주택과 현장조사

○ 조사내용 : 지원대상의 적정여부, 공사물량 대비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

□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

○ 일 자 : 2015. 3월말 예정

○ 장 소 : 구청 3층 기획상황실

○ 안 건 :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의 의결

□ 지원금 교부신청 및 교부

○ 교부 신청기간 : 2015. 4월초 예정

○ 교부대상 : 2015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지

○ 지원금액 : 1개 단지 11,400천원 한도내(총예산액의 10% 범위)

○ 지원금 교부 : 2015. 4.15.이후

○ 교부방법 : 신청단지 계좌로 계좌입금(재무과)

※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이라도 지원금 교부신청이 없을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

- 예산과목 : 공동주택관리,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지원, 민간자본이전, 민간자본사업보조
- 구비서류 : 공동주택지원금교부신청서,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서류,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 및 통장 개설 사본(자부담 예치)
- 정산서 제출
 - 일 시 :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
 -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, 사업추진 실적, 계약서 사본, 지출증빙서류(신용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 등), 전·후 사진

□ 집행결과 검사확인

- 방 법 : 서류검토 후 필요시 현장 확인
- 확인결과 부적합한 집행사례 발생시
 - 허위지원금 집행 : 지원금 환수, 관련자 고발
 -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 : 관련자 고발
 - 경미한 절차위반 등 : 경고조치
- ※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

V 세부추진일정

- 2015. 2. 4. ~ 2. 6. 지원계획 및 안내문 발송(우편)
- 2015. 2.10. ~ 3.10. 지원신청서 접수
- 2015. 3.11. ~ 3.20. 현장조사
- 2015. 3월말 예정 심의위원회 개최
- 2015. 4월초 예정 지원금 교부신청 접수
- 2015. 4.15이후 지원금 교부

VI 행정사항

□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단지 현장 중심으로 지도·점검 철저

- 붙임
1. 공동주택 지원현황 1부
 2. 지원금 지원기준 1부
 3. 신청서류 1부
 4.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 평가표 1부